

(별표) 대단위 강의료 지급기준

수강인원	지 급 율
101명~115명	학점당 전임교원초과강의료 또는 시간강사강의료의 20%
116명~130명	학점당 전임교원초과강의료 또는 시간강사강의료의 40%
131명~145명	학점당 전임교원초과강의료 또는 시간강사강의료의 60%
146명~160명	학점당 전임교원초과강의료 또는 시간강사강의료의 80%
161명 이상	학점당 전임교원초과강의료 또는 시간강사강의료의 100%